

#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 심사 보고서

2023년 10월 24일  
미래·복지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2023년 10월 13일
- 나. 제안자: 정장훈 의원 외 9명
- 다. 회부일자: 2023년 10월 16일
- 라. 상정일자: 제2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의결(2023. 10. 24.)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정장훈 의원)

#### □ 제안이유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은 사회참여를 위한 구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이나 장애 유형별 특성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강서구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및 활발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 (안 제1조 및 안 제2조)
- 나.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명시함 (안 제3조)
- 다. 구청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및 제5조)

- 라.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사항을 정함  
**(안 제6조)**
- 마.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심의자문에 관한 위원회 설치를 규정함 **(안 제7조)**
- 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3조
- 나. 예산조치: 필요시 편성
- 다. 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 라. 기 타: 입법예고(2023. 10. 16. ~ 10. 20.) 결과 의견 없음

###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권오숙)

#### 가. 제정취지

-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활발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

#### 나. 주요 제정내용

-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및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와 장애인”이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sup>1)</sup>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의사소통”이란 언어, 혹은 몸짓이나 화상 등의 물질적 기호를 매개수단으로 개인 또는 공동체 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기 선택 및 결정을 위해 정신적·심리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
3. “의사소통장애인”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장애인 중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말한다.
4.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 의사소통에 있어 차별받지 않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와 장애인의 장애 유형, 정도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지원해야 한다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함**
-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장애유형별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 제공 및 의사소통 환경 구축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의사소통장애인의 장애유형, 정도 및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시행계획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 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홍보와 인식 개선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7조에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sup>2)</sup>를 명시함

**제7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심의 및 자문)** ① 구청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 안 제8조에서 원활한 제도운영을 위해 지원사업의 내용과 사업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제8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수단의 개발 및 보급사업
  2.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인식개선 교육사업
  3.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네트워크 구축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장애인 복지 관련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이나, 장애인복지 시책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 부칙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위원회 심의·자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는데

– 이는 안 제7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심의 및 자문)에 따른 것으로,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사항 중 일부 사항을 해당 조례나 규칙에서 규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sup>3)</sup>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장애인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 복지 관련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복지 시책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위원회 심의·자문에 관한 사항 [신설]

##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sup>4)</sup>에 따라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및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도모하고자 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3) 부칙규정: 다른 조례 또는 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출처: 법제처,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부칙으로 다른 조례나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은 관련 자치법규를 동시에 정비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을 기할 수 있고, 관련 자치법규를 별도로 입법·심의하는 번잡과 비能把을 피할 수 있으며, 자치법규 개정의 시차(時差)에 따른 법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음

4) 제23조(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 UN 장애인권리협약<sup>5)</sup>을 비롯한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자체가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고 사회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2021년 서울시 장애인 의사소통 실태조사」<sup>6)</sup>에 따르면
  - 장애인 당사자가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에 대해서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41.77%로 제일 높았으며 의사소통하는 방식에 대해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해서 17.72%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 또는 장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13.92% 순으로 나타남
  - 또한 사회적 편견으로 의사소통에 제약을 받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는 답변[매우 그렇다(33.75%), 때때로 그렇다(38.75%)]이 72.5%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답변[그렇지 않은 편이다(16.25%), 전혀 그렇지않다(11.25%)]은 27.5%에 불과하였음
- 따라서 의사표현과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아 의사소통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의 법적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5) UN 장애인권리협약 제21조(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당사국은 이 협약 제2조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의사소통 수단을 통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얻고 전파하는 자유를 포함한 의사 및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6) 출처: 2021년 서울시 장애인 의사소통 실태조사, 서울시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 조사기간: 2021. 3. 10. ~ 3. 24.  
- 조사대상: 서울시 거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지는 장애인 및 주변 환경 300명

- 이는 등록장애인 수[28,513명, 2023. 1. 31. 기준]가 서울시에서 가장 많고, 전체 인구의 5.0%를 차지하는 우리구 현실을 고려할 때 선도적인 조례 제정의 취지 역시 분명할 것이며

※ 관련 자치법규 현황(2023. 9. 30.기준)

구 분	자치단체	법규명
광역 (9개소)	충청북도	충청북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경상북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전라남도 한국수화언어·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조례
	충청남도	충청남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촉진 및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조례
기초 (9개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각·언어장애인 의사소통권 보장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의사소통을 활성화하여 상호 다양성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 6. 토론요지: 생략

## 7. 심사결과: 원안가결

※ 붙임 관계 법령 1부.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 기기의 접근·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제작·가공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한국수어, 구화,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